2084~2085

			「가		ı		
		[2012.2	2.8] [259 , 2012.2.8]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11.6	.15>		((앞 쪽)) 02 - 500 -
		수의과	학기술시험·	·분석의뢰서			
의	상호(명칭)		사업7	 아등록번호			
ㅋ 뢰 인	성명(대표자)		주민등	등록번호			
긴	주소(사무실)		·		(전화:)	
시험	·분석 시료명						
시험	·분석의뢰내역						
시험	·분석의뢰목적						
	지 출 장 의 2 성 여 부	□ 여			부		
	ト축전염병예방법 와 같이 수의괴				12조제1항의 규 나다.	·정에 따라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g 또는 인)	
농	·림수산검역검사본	부장 귀하					
수의:	'비서류 과학기술의 특· 한 자료 1부	성에 관한 설 ¹	명서 등 시	험 또는 분	-석에 가축전염병 46조제2항 따라 농력	수료 경예방법 제 '의 규정에 남수산식품 정하는 수	
							i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표 1] <신설 2008.2.5>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제I4조의2제2항 관련)

1. 전문인력 구성기준

<u> </u>	
구분	자격기준 등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는 수의사로서 병성감정
	업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총 3명 이상이 근
	무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기관 또는 관련
병성감정보조원	기관에서 3개월 이상 병리조직표본 슬라이드 제작, 세균배
	양 또는 혈청검사 등의 훈련을 받은 자

2. 시설 기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	수량	비고
부 검 실	1실	
소각실 또는 소각로	1실 또는 1로	
병성감정 전용 실험실	1실	

3. 실험기자재 구비기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다음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필수기자재

기, 현기기계		
장비명	수량	비고
광학현미경(Microscope)	1대	
천평(Balance) 또는 전자저울	1대	
냉장고(Refrigerator)	1대	
수소이온농도측정기(pH Meter)	1대	
원심분리기(Centrifuge)	1대	
고압멸균기(Autoclave)	1대	
배양기(Incubator)	1대	
증류수 제조기(Distilled water maker)	1대	
조직처리기(Tissue processor)	1대	

조직포매기(Embedding center)	1대	
조직절편기(Microtome)	1대	
항몬수조(Floating bath)	1대	
슬라이드건조기(Slide warmer)	1대	
파라핀 용융기(Paraffin melting oven)	1대	
염색밧드 또는 자동조직염색기 (Automatic slide stainer)	1대	
부검도구	1세트	
부검대(Necropsy table)	1대	
혐기배양기(Anaerobic jar)	1개	
혈구희석용피펫 (blood cell diluting pipette)	1대	
혈구계산판(Countingchamber)	1대	
알콜램프 또는 가스램프	1대이상	
세균배양용 백금이(루프)	3개이상	

나. 권장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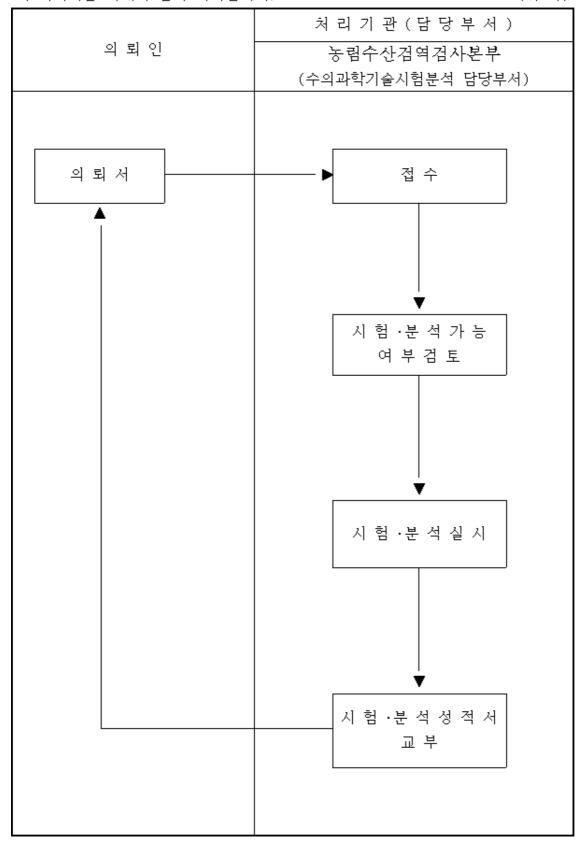
장비명	수량	비고
형광현미경 (Fluorescent microscope)	1대	
CO2 배양기(CO2 incubator)	1대	
냉동조직절편기(Cryotome)	1대	
혈액검사기 (Automatic blood cell counter)	1대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1대	
자동조직염색기(Automatic slide stainer)	1대	
도립현미경 (Inverted microscope)	1대	
동혈청미량성분분석장치 (Automatic serum analyzer)	1대	
진공펌프(Vacumm pump)	1대 이상	
HPLC system	1대	
효소면역법판독기 (ELISA reader)	1대	
중합연쇄반응기(PCR machine)	1대	

다. 필수 실험실 물품

「가 .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물품명	수량	비고
에칠알콜(Ethanol)		
메칠알콜(Methanol)	"	
크리스탈 바이오렛 (Crystal Violet)	н	
요오드(Iodine)	н	
사프라닌(Safranin)	н	
슬라이드글라스(Slide glass)	н	
커버글라스(Cover glass)	н	
파라핀(Paraffin)	и	
자이렌(Xylene)	n n	
김사(Giemsa)	н	
에오신(Eosin)	и	
헤마톡시린(Hematoxylin)	n n	
포르말린(Formalin)	и	
페트리디쉬(Petri dish)	n n	
혈액배지(Blood agar)	н	
뮬러힌턴배지 (Muller hinton agar)	и	
맥콩키배지(MacConkey agar)등 세균 분리동정용 배지수종	н	
그 밖에 병성감정에 필요한 시약류 등	u u	

[별표 1의2] <개정 2012.2.8>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관련)

1. 공통기준

- 가.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서 차량의 진입로나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나. 가축사육시설 등 당해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고 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 가.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를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 자동
- (1) 당해 가축사육시설의 사람 출입구에는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출입자 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압분무기를 갖 추어야 한다.
- (2)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장의 영업자
- (1) 가축·식육 등의 운반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소독약 보관용기 및 연결파이프에는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 열선장치 등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 (3)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가금류 도축장의 경우에는 가금류의 수송용기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집유장의 영업자
- (1) 원유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 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08.2.5>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서 -					
	ୀଓପ୍ଟେମ	30일			
	기관명(법인명)				
신청자	성 명				
7건/8/AL	법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성 명				
병성감정 책임자	주민등록번호				
7 67	기 타				
지정대상	질병별·검사항목				

「가축전염병예방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 구비서류

- 1. 조직·인원 및 사무분장표
- 2.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병성감정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 3.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병성감정담당자 수의사 면허증 사본
-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 (1) 사료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 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운영자
- (1) 관리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 치하여야 한다.
- (2) 당해 시설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축산법에 의한 종축장의 운영자
- (1) 당해 시설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샤워장 및 소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 (2) 종축장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당해 시설을 소독할 수 있는 2대 이상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축산법에 의한 부화장의 운영자
- (1) 관리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부화용 알 및 난좌(鄭座, 계란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부화실 및 병아리방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 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부화장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야 한다.
- 아. 「축산법」에 따른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 (1) 계란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 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자.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 (1) 가축분뇨 및 이를 주원료를 하는 비료의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

8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1,6,15>

(앞 쪽)

제 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지정대상(질병별 · 검사항목):

기관(법인)명:

최초지정년월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뒤 쪽)

년 월 일	구 분	당초지정사항	변경지정사항	확인 확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1.6.15>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কি প	형성감성실시기관지성 변경신청서				
ਜੀ ਹ ੁਹੀ	편 전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소 주					
회 ㅅ	구 평					
지 정	번 호					
당초 지	정 사항					
변경하고지	사하 는 사항					
변 경	사 유					

「가축전염병예방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하 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날인 또는 서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 구비서류:

1.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11.6.15>							
				지			처리기간
	병성감정인	십무의	【무의 □ 폐 지 신청서 □ 재 개			7일	
신청인	성 명				법인(² 등록 ¹		-
7 0 U	주 소				(전:	화:)
기관의	명칭						
소 기	대 지				(전:	화:)
휴지ㆍ폐지ㆍ재개일			년		월	일	
휴지의 경우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후						
	염병예방법 따라 위와						
농림수산검	!역검사본부장	귀하	년 신청인	월	이번	(서명 및	또는 날인)

_______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11.6.15>

가축 병성감정 실적(년 월)

□ 기관명:

□ (축종:) 병성감정 실적

<u> </u>		.0	<u> 경심</u>	<u> 경 실적</u>						
			진단 건수			날생 상흥		발생시·군		
병 성	질	병	명	농가수	검사 두수	사육 두수	발생 두수	폐사 두수	별농가수	비고
바이러스성										
세균성										
기생충성 기생충성										
시경공경										
곰팡이성										
좀 양										
기타										
하 입	7:	1								

※ 검사실적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역검사본부 또는 다른 기관의 의뢰 시에는 최종 검사기관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Γ	П	거지	- 시제:	(지) - 토	가추반여기과에	8181

<u> </u>	<u> </u>	/ 11 1 12 1	<u> </u>			
검진대상 질병명	발생농가 수	사육두수	발생두수	폐사두수	발생시·군별 농가수	비고

※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른 대상 질병 중 양성 실적을 작성한다.

[별지 제1호의7서식] <신설 2011.7.25>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									
사업장명			대표	포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지	대지					
연 락처	☎ ,	휴대폰,		FAX	**				
	면 번	1			2	3			
	①성명(영어)								
	②국적								
	③외국인 등								
신고대상 인적	록번호								
사항	④여권번호								
	⑤생년월일								
	⑥입국일자								
	①체류기간								
	⑧계약기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유의사항

- 1.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는 직접 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방교육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8서식] <신설 2011.7.25>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

년월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서마		기 국 인	Ι	Π
	(713/3/3)	(ㅜ뒨중숙반모)	(선확번모, 휴네는 번모)	성 명 (영 어)	국 적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

별지 제1호의9서식] <신설 2011.7.25>

(앞쪽)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Animal Quarantine Declaration for Travellers								
성명		국적 New						
Full name		Nationality		r 11 4 4 4 1 -	Ħ			
주민등록번호 National ID No		성별 Sex		[]남Male []여Fem				
여권번호		휴대전화		[]				
Passport No		Mobile Phone No	o.(Tel.)					
국내 주소								
Current address								
직업 Occupation	[]가축소유자 (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 (동거가족 []수의사 Veterinarian, [] []가축방역사 Field Inspector []동물사료 판매자 Animal Waste collector & carrier, [[]원유 수집·운반자 Rawmil	· 포함) Farm employee 가축인공수정사 Artificia r, []동물약품판매자 Feed Distributor, []가축시장 종사자 Live	(incl. its fa I Inseminati Veterinary []가축분뇨 stock marke	amily member ion Techniciar Drug Distributo 수집·운반자 et workers	n or			
	문한 국가를 기입해 주 countries where you h		g your tr	avelling.				
1)	2)	3)	l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k "∨", if you have any of the			luring travelling	L.			
(뒷면 참조) Visit (N 발생국 체류·경유 []우제류(소 ortransit FMD, Ala Visit clo (see back side for pig, etc	ven-hoofed animal(cattle	, 농가 방					
[]우제류·가금류 (cloven-hoofed·	가축시장 방문 Visit livestoo poultry) market	ck []육류·햄·소시기 products inclu			_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 작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축 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Declaration For	false statement concerning m, you may face a senter fines, in accordance with ntion Act.	nce of up to one yea	ar of impri	sonment or	up to 5			
			년(yy)	월(m m)	일(dd)			
	신고				(서명)			
노리스시끄어		of traveler 소자시 교육			(signature)			
	검사본부장(검역검사: and Fisheries Quarant		n Adend	U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148mm×210mm (녹색지 70g/mf)

(뒷쪽)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 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 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 사본부(검역검사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 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 물검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 검사소)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 • 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7.25>

	소독실시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									
ノ	 기설명					대표자	71 - 1 - 1			
					(소)	가자 또는 극	[[[
2	· 재지							(전호	참 :)
			소	독 실	! 시·	상 황				
연월일	소독실시다 (차량번호,		소독종류	소독	·약품	소독장비	소독실	시자	비 (대상자	

210㎜×297㎜(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앞쪽)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서 Departure Declaration for Farming Interested								
¼ n4	Departure Decidian		intere	sieu				
성명 Full name		국적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National IN No		성별 SeX		[]	남 Male 여 Fema	le		
여권번호 Passport		휴대전화 Mobile Phone I	No.					
국내 주소 Current address								
직업 Occupation	[] 축산농가(동거가족 [] 축산농가 고용자(동거 [] 수의사 Veterinarian [] 가축방역사 Field Ir [] 동물약품판매자 Veteri [] 사료판매자 Animal []가축분뇨 수집 • 운반 []가축시장 종사자 Liv []원유 수집 • 운반자	[] 가축 nspector inary Drug Distributo Feed Distributo 난자 Livestock V restock market	인공수정 itor r Vaste ci workers	행사 A ollecto	A.I Technic or & carri	cian er		
	·문할 국가를 기입ㅎ untry where you will sta	매 주십시오.						
1)	2)		3)					
	∥방법」 제5조제6항 와 같이 가축전염병					4제1함의		
			년(y	y)	월(mm)	일(dd)		
		신고인 Name of traveler				(서명) (signature)		
Animal Plant and F	· 본부장(검역검사소장) 귀하 Fisheries Quarantine and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		Korea					

148mm×210mm (녹색지 70g/mf)

(뒷쪽)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 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 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 사본부(검역검사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 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 물검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 검사소)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 • 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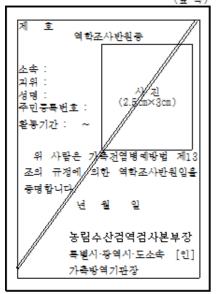
[별표 2] <개정 2012.2.8>

소독 방법(제20조제2항 관련)

1. 소독종류별 실시방법

종류	방 법	소독목적물	비고
약물 소독	1. 생석회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소량의 물을 뿌린 후 생석회를 충분히 살 포한다.	축사의 바닥·분뇨 ·분뇨구·오수구· 습윤한 토지 등	○사람과 가축에 직 접 접촉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2. 석회유(생석회 100분의 10 에 물 100분의 90을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충분히 뿌린다.	축사의 벽·바닥· 울타리·토지 등	○뿌릴 때에는 고루 저으면서 사 용한다.
	3. 표백분을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린 다.	제1호와 같다.	○표백분은 광선및 습기에 노출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한다.
	4. 표백분수(표백분 100분의 5에 물 100분의 95를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바른다.	제2호와 같다.	○표백분은 광선및 습기에 노출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한다.
	5. 석탄산수(석탄산 100분의 3에 물 100분의 97을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동물의 다리·사체, 축사, 금속성기계 또 는 기구, 가죽으로 만든 기구 등	○ 뿌릴 때에는 충분 히 섞어서 사용한 다. ○알카리성 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물로 씻은 후 에 사용한다.
	6. 승홍수(승홍, 염산 및 물을 1:10:189의 비율로 섞은 것 또는 1:1:1,000의 비율로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동물의 다리·몸체 (소를 제외한다)· 사체, 축사, 기구· 기계류(금속성인 것 을 제외한다) 등	○금속성의 기구나 기계에는 사용하 지 아니한다. ○승홍수는 비금속 류의 용기에 사용 한다.
	을 1:34의 비율로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으로 만든 기구 등	소독할 때에는 3 시간 이상 담근
	8. 크레졸비누액(3~5%)을 사 	· 关・죽사・가죽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6.15> (앞 폭)



56mm×80mm(보존용지(1종) 120g/mi) (뒤 폭)

1. 이 증표를 소지한 자가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정 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2. 이 종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 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비고 1. 규격: 가로 56mm, 세로 80mm 2. 바탕색: 황색 3. 복선: 적색

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가죽으로 만든 기구 등	
9. 염산식염수(염산 100분의 2 에 식염 100분의 10과 물 100분의 88을 섞은 것)를 사 용하는 경우		
가. 염산식염수에 소독목적물 을 담근다.	장가죽 · 산적가죽	
나. 흐르는 물에 소독목적물을 을 충분히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 18°C 염산식염수에서 2시간 이상 침적한 다음 중탄산소다 용액(0.8% 이상)을 채워서 소독이 종료된 케이싱을 30분간 중화한다.		
다. 소독목적물에 염산식염수 를 채운뒤 1시간 이상 그 대로 둔 후 중탄산소다용 액(0.8% 이상)과 교체하여 다시 30분 이상 둔다.		
10. 가성소다 그 밖에 알칼리 수용액을 사용하는 때에는 2%의 수용액을 만들어 소 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 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 다.	·분뇨저장용기 등	
 11. 알콜(70% 이상) 또는 승홍(1%)에 적신 탈지면으로 충분히 닦는다. 12. 탄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 	가죽류 	
우 가. 2%의 탄산나트륨이 되게 하여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 에 담근다.	뼈ㆍ가죽류	

나. 0.1% 실리콘산나트륨을 첨가한 4% 탄산나트륨 수 용액으로 씻어 내거나 뿌 린다.	항공기에 한한다.	
13. 차아염소산나트륨(유효염 소 4% 이상)을 사용하는 경 우		
가.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 (40ppm)을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 물을 이에 뿌린다.	식용으로 제공하기	
나. 흐르는 물에 소독목적물을 을 충분히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 차아염소산다트륨 500배 희석액에 1 8°C에서 2시간 이상 침적한다.		
다. 소독목적물에 차아염소산 나트륨 500배 희석액을 채 운뒤 2시간이상 그대로 둔 다.	기	
14. 올소페실페닌산나트륨용액 (물 1리터에 올소페실페닌 산나트륨을 10.2그램 이상 섞어 그 온도를 16℃ 이상 으로 한 것)을 소독목적물 에 충분히 뿌린다.	컨테이너	
상)를 사용하는 경우 가. 이산화염소(3%) 100분 의 1에 물 100분의 99를 섞은 것을 사용하는 때에 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 에 담근다. 나. 이산화염소(3%)와 물을	1. 분뇨구·사체 2. 실내·축사·항공 기내 3. 기계·기구·울타리 등 4. 뼈·가죽류·모피 류·뿔·육류 등 5. 탈취·악취제거 물 건 6. 출입구 발판소독·	

· · · · · · · · · · · · · · · · · · ·	가. 압력: 상압(1kg/cm²) 나. 온도: 상온	가축만 해당한다. 허가 시 정한 소독목 적물 1. 우황·사향 2. 녹용 및 식용으로 제공하는 한약재 3. 그 밖에 식용에 제 공하는 것	· • 내부까지 소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날 등을 사용하여 밀폐한 후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가. 1세제곱미터당 포르말린 (40%) 53밀리리터, 과망	비 3. 뿔·발굽·골분 등	에는 진공장치를 사용한다. ㅇ소독효과가 불안 정하지 아니하도
증기 소독	소독목적물을 소독기 안에서 1시간 이상 120℃ 이상의 증 기에 접촉시킨다.	옷 · 모포 · 포대 및	○염색의 우려가 있 는 물품은 따로 실시한다.
물끓임 소독	소독목적물 전부를 물속에 넣 어 1시간 이상 끓인다.	옷·모포·포대·고 기·뼈·발굽·반가 공사료 및 이와 접 촉된 기구	
발효 소독	1. 폭 1~2미터, 깊이 0.2미터 길이의 구덩이를 파서 발효 소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안에 소독용 생석회를 뿌린 다음 병원체에 오염되	분뇨·깔짚 등	 소 또는 돼지의 분뇨를 소독하고 자 하는 때에는 깔짚에 생석회를 혼합하여 충분히 발효시킨다.

	지 아니한 깔짚 등을 채우고 그 위에 소독목적물을 쌓는 다. 그 표면에 생석회를 다 시 살포한 후 병원체에 오염 되지 아니한 깔짚 등으로 덮 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1주 일 이상 발효시킨다.		
	2. 불침투성 물질로 축조된 오 물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소독목적물에 생석회 등을 살포한 후 1주 일 이상 발효시킨다.		
자외선 소독	소독목적물을 15와트의 자외 선살균 등으로부터 50센티미 터 안에 두고 1~2분 동안 자외선이 소독목적물에 골고 루 쬐도록 한다(자외선소독 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 치의 사용법에 따른다).	포장 등	
기구 · 장치 등을 이용한 소독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 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검 역검사본부장으로부터 제조 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 를 받은 기구·장치 등을 이 용한 소독은 그 용법에 따른 다.	허가 시 정한 소독목 적물	
분무 소독	검역검사본부장이 허가한 구제 역, 조류인플루엔자의 용법과 용량이 있는 소독제를 희석 한 후 5초간 소독목적물에 분무한다.	– –	분무소독 시 「동물 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제37조에 따른 준수사항 준 수

비고: 위에서 규정한 소독 외에 가축방역 또는 지정검역물의 특성 등을 고려한 별도의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 독을 할 수 있다.

2. 소독대상별 소독방법

가. 축사의 바닥과 흙을 소독할 때에는 바닥에 소독용 생석회(CaO)를 뿌리고 깊이 0.3미터 이상의 흙을 판 후 다시 생석회를 뿌리고 깨끗한 흙을 넣는다. 파낸 흙은 소독하여 매몰한다. 다만, 브루셀라병 및 가금콜레라의 경우에는 흙을 파지 아니하고 생석회·포르말린수·크레졸수 등 소독약제를 충분히 뿌린

다.

- 나.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사체 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 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나 정밀검사의 결과가 있는 물건을 운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홍수·석탄산수·포르말린수·크레졸수 등 소독 약액에 담근 천으로 병원체를 누출시킬 위험이 있는 눈·코·입·항문 그밖의 부분을 잘 막아 오물의 누출을 방지하고, 동 소독약액에 담근 거적 등으로 전체를 감싸도록 한다.
- 다.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 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이동 중에 분뇨 그 밖의 오물을 누출시 킨 때에는 승홍수·석탄산수·가성소다 그 밖의 소독약제 등으로 누출물 및 이 에 오염된 장소를 충분히 소독한다.
- 라. 탄저·기종저 등 아포(芽胞)를 형성하는 병원체를 없애기 위하여 물건 등을 약물소독하는 경우에는 승홍수·포르말린수·염산식염수·수산(옥살산) 또는 염산을 더한 석탄산수로 소독을 실시한다.
- 마. 차량·선박·항공기 등의 운송수단과 수송용기 등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다.
 - 1)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장소에서 이동하는 차량 또는 동 지역에 출입 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석 등 차량 내부를 소독제로 소독한다.
 - 2) 가축·지정검역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차체의 오물을 제거하고 세차를 한 후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그 밖의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의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소독을 실시한다.
 - 3)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선박·항공기에 대하여는 그 가축 또는 사체가 있었던 장소 및 그 주변장소에 대하여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한다.
 - 4) 가금류 수송용기에 대하여는 차량 등에서 분리하여 오물을 제거하고 씻은 후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한다.
- 바. 차량의 외부, 바퀴 및 흙받이가 소독약으로 젖을 수 있도록 소독해야 하며, 소독조에는 차량의 바퀴나 사람의 장화가 잠길 수 있도록 소독약을 채워야 하고, 2~3일마다 소독약을 갈아주고 소독조안의 오물을 수시로 제거한다.

27

- 사. 소해면상되증의 원인체인 이상프리온단백질을 약물소독하는 경우에는 유효 염소농도 2% 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2노르말(N)농도 수산화나트륨 으로 섭씨 20도에서 1시간 이상 실시하거나 동 소독약에 24시간 정도 담가 둔다
- 아. 소독약은 제품별로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소독약과 섞어서 사용하지 아니한 다.
- 자. 소독약의 누출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한다.

[별표 3] <개정 2011.6.15>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적용대상 가축 : 소·돼지·닭

나. 적용대상 질병

1) 중점관리대상 질병

구분	디	l 상 질 병
ਾਦ	제1종가축전염병	제2종가축전염병
소	구제역	탄저 · 기종저 · 브루셀라병 · 결핵병
돼지	구제역·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돼지유행성설사
	뉴캣슬(Newcastle)병·고병원 성조류인플루엔자	추백리·가금티프스·저병원성조류인플 루엔자

2) 예방접종대상 질병

구분	대 상 질 병
소	구제역·탄저·기종저·소아까바네(Akabane)병·소전염성비기관염
돼지	구세역·돼지열병·돼지오세스키병·돼지전염성위장염
닭	뉴캣슬병·닭전염성기관지염·닭전염성에프(F)낭병

다. 적용대상 농장은 가축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단위로 한다.

2. 등급기준

가. 배점기준

1)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

가) 제1종가축전염병

구 부	배 점 표							
T T	20점	16점	12점	8점	5점	0점		
마지막 발생일 기준	5년경과	3년경과	2년경과	1년경과	6월경과	6월이하		

나) 제2종가축전염병

구 분	배 점 표							
T U	10점	8점	5점	0점				
마지막 발생일 기준	2년경과	1년경과	6월경과	6월이하				

2) 예방접종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3>

제	호				000)검사증및	병서						
	· 축 :시설	놈장명					소재지						
소 ·	유 자	성명				주민등록	t번호						
(관i	리자)	주소								(전화	:)
		검 사 의 목 적				검 사 연월일				검사두=	r l		
	₩실시 역	검사방법											
검 사	축 종	품 종	성	별	연 령	귀표(개 번호	- 1		특	징	겉	사결:	라
가 축													
검	사자	소 속			직위 또	E는 직급				성 명			
		염병예방법 [제3항]의										- 7조제2	양
				년		월	일						
								시·	도지	산식품부: 사 수∙구청?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구분	배 점 표							
T T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평균접종율	95% 이상	80% 이상 95% 미만	65% 이상 80% 미만	50% 이상 65% 미만	50% 미만			

※비고

- ① 예방접종율의 확인은 가축의 종류별 사육형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혈청검사 결과에 따른다.
- ② 예방접종 대상질병 중 해당 지역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질병의 접종율을 100%로 계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③ 예방접종 대상질병 중 둘 이상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방역 및 위생관리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배점
	가. 농장입구에 차량 소독시설 설치	4개 모두 적합	10
1 2 5	나. 농장입구에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	3개 적합	8
1. 소독 설비	다. 농장 내 분무용 소독시설 설치	2개 적합	6
걸미	라. 농장외부와의 차단을 위한 담장·울타리 등	1개 적합	4
	시설 설치	모두 부적합	0
	가. 1년 이상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4개 모두 적합	10
2. 소독	나. 주 1회 이상 가축사육시설 소독실시	3개 적합	8
2. <u>고</u> - 실시	다. 소독약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개 적합	6
무시	한 소독약품은 제외한다)구입·사용	1개 적합	4
	라.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실시	모두 부적합	0
	가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위탁처리를 포함한	4개 모두 적합	10
3. 환경·	다) 나. 사체 처리용도의 소각로 설치(위탁처리를	3개 적합	8
위생	나. 사세 서니공도의 소식도 열시(규칙서니를 포함한다)	2개 적합	6
관리	다. 병든 가축의 격리시설 설치	1개 적합	4
	라. 쥐·곤충 등을 없애는 시설 설치	모두 부적합	0
4. 가 축 의	가. 새로 구입한 가축의 기록 보관(1년 이상이어 야 한다)	2개 모두 적합	10
거래기록	아 인터) 나. 출하 또는 판매한 가축의 기록 보관(1년 이	1개 적합	5
유지	상이어야 한다)	모두 부적합	0
5. 방역	가. 최근 1년간 축산관련단체의 방역교육 참석	2개 모두 적합	5
		1개 적합	3
ш- 0	커. 커는 1년년 포6년 시에 테린 시세포프 클시 	모두 부적합	0

나. 등급판정기준

- 1) 종축장이 아닌 농장의 경우
 - 가) 1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80

점 이상인 경우

- 나) 2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60 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 다) 3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미만인 경우
- 라) 4등급: 1등급 내지 3등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농장
- 2) 종축장인 농장의 경우
 - 가) 1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 나) 2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 다) 3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 라) 4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 마) 5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미만인 경우

3) 마을단위

- 가) 1등급: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90% 이상 인 경우
- 나) 2등급: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 다) 3등급: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라) 4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마을
- 3. 가축질병관리등급 기준의 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다.

[별표 4] <개정 2010,11,26>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제24조제4항 관련)

1.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

- 가. 돼지열병 또는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하여 법 제19조제1항제1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돼지
- 나. 소브루셀라병 또는 소결핵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 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 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소
- 다. 그 밖에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법 제19조제1항제1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
- 2.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는 가축
- 가. 돼지열병의 경우: 임상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결과 돼지열병에 걸리지 아니 하였다고 판정된 돼지
- 나. 돼지오제스키병의 경우: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돼지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나타나지 아니하는 번식용 돼지
- 다. 소브루셀라병 및 소결핵병의 경우: 소브루셀라병·소결핵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억류 또는 이동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소중 혈청 학적검사 등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소
- 3. 영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에 출하할 수 있는 가축: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축으로서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건강하지 못하여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가축
- 4.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도축장 등으로의 출하절차
- 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권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사실을 다음의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u>.</u>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3.3>

[일시	시14모	<u>-417</u>	1 ∠\u.⊊	<u> </u>	*						
체		호	Ç	0000	주사 • 면역	選べ]증명서				
가 사육	축 ·시설	농	장 명			소	: 재 :	지			
소수	유 자 리자)	성	명			주되	민등록번	호.			
(관리	리자)	주	소					(전	<u></u> 화:)
		폭	적		연월일				실시	두수	
실시	내역	종	류		제품명 제조회사	및명				번호 .No)	
가	축	종	품 종	- 성 별	연 령	귀포 번	포(개체) 호		특경	ß	주사 횟수
기 축											
丑	시방법			'							
실/	시자	소속	-		직위 또는	직급				성명	
Г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2항(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2항(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사·면역표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 · 도 지 사 인 시장·군수·지치구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도축장으로 출하를 권고한 경우: 해당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도가축방 역기관장
- 2) 재활용시설로 출하를 권고한 경우: 해당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나. 도태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도태대상 가축의 출하예정일 3일 전 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에 도태대상 가축의 출하계획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해당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도가축방역기관 장
 - 2) 재활용시설로 출하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다. 도태사실의 확인

- 1) 도축장: 해당 도축장에서 도태가축을 검사한 검사관은 도태권고서의 확인란에 기재·서명하여 도태권고서를 교부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재활용시설: 해당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소속 가축방역관 은 도태권고서의 확인란에 기재·서명하여 도태권고서를 교부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5. 도태방법

- 가,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방법에 따른다.
- 나. 재활용시설에 출하된 가축: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12.2.8>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5조관련)

1. 소각기준

구 분	소 각 실 시 장 소	소각방법	비고
사 제		1. 소각로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의	
	태울 수 있는 시		태운 후
	설이 있는 장소	2. 주로 땔나무를 이용하는 때에는 다음	
	2. 수원지·하천·도	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의한다.	재는 매몰
	로 및 주민이 집	가. 연료	할 것
	단적으로 거주하	가축의 사체, 물건 등을 태우는데 충	2. 사체와
	는 지역에 인접하	분한 분량의 땔나무 및 보조연료(볏	물건 등을
	지 아니한 곳으로	짚·건초·타르·석유 등)를 이용한다.	태운 장소
	서 사람이나 가축	나. 사체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구덩	와 그 부
	의 접근을 제한할	이를 파고, 그 밑에 작은 구덩이를	근을 소독
	수 있는 장소	판다. 작은 구덩이 바닥에는 볏짚·건	할 것
		초 등을 깔고, 타르·석유 등을 뿌린	
		후 땔나무를 쌓는다. 그 위에 가축의	
		사체를 두고 불을 붙여 완전하게 태	
		운다. 태운 후 남은 뼈와 재는 그 장	
		소에서 매몰한다. 구덩이가 있는 지	
		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 03		준하여 태운다.	0 - 01 - 31
오염	1. 소각로	1. 소각로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의	
물건	2. 수원지·하천·도	, , , , , , , , , , , , , , , , , , , ,	을 태운
		2. 당해 물건을 태우는데 충분한 분량의	'
	│ 단적으로 거주하		'- '-
	는 지역에 인접하	유 등)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태운다.	할 것
	지 아니한 곳으로		
	서 사람이나 가축		
	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		

2. 매몰기준

가. 매몰 장소

(1) 다음 어느 하나의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3,3>

제		Ī	Ĺ											
			00	000	(<u>°</u>	卡물목	<u>?</u> -	욕·면역요	법	• 투약)	7 0	·명서		
가 사육	축 시설	. 농	· 장	- 명					소	. 재	ス			
소 f (관리		서		명					주	민등록번	Īġ			
(관리	니자) 	주		소							(건	<u>년</u> 화 :)
)1 ·1	- 1) cd		지분	목적				실시연월약	일			실지-	두수	
실시	내역	│약	품 알되	· 명 [체명)				(투약)방탁	버			사용(투	약)량	
x 1	축	종		품 종	7	성 별		연 평		거표(개체 번 호		특	징	실시 회수
실 시														
가														
축														
실지:	자 4	<u>১</u> 속			•			직위 또는 직	급				성명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물목욕·면역요법·투약)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 도 지 사 인 시장·군수·자차구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일 것

- 가) 수원지
- 나) 하천
- 다) 도로
- 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 (2) 매몰수량을 고려하여 매몰지 크기를 결정하되, 지하수위·하천·주거지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깊이 및 크기를 설정할 것
- (3) 농장부지 등 매몰 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장소를 우선 활용하되, 해당 농 장부지 등을 활용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활용할 것

나. 사체의 매몰

- (1) 가축의 매몰은 살처분 등으로 가축이 죽은 것으로 확인된 후 실시하여야 하고, 사체의 매몰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 (가)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해당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 격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파야 하며, 매몰 구덩이의 바닥면은 2% 이상의 경사를 이루도록 한다.
 - (나)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은 두께 0.2mm 이상인 이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로 덮는다.
 - (다) 구덩이의 바닥에는 비닐에서부터 1m 높이 이상의 흙과 5cm 높이 이상의 생석회를 투입하고, 생석회 위에 40cm 높이 이상으로 흙을 덮은 후 2m 높이 이하로 사체를 투입한다.
 - (라) 사체를 흙으로 40cm 이상 덮은 다음 5cm 두께 이상으로 생석회를 뿌린 후 지표면까지 흙으로 복토를 하고, 지표면에서 1.5m 이상 성토를 한 후, 생석회를 마지막에 도포한다.
 - (마) 가스 배출관은 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홈통을 이용하여 사체와 접촉되도록 설치하고, 가스 배출관의 밑면에는 자갈

등을 깔아 막힘을 방지하며, 매립 당시 20㎡당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되, 가스 및 용출수가 많이 발생하거나 매몰한 사체가 융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설치 개수를 늘린다.

- (바)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되 배수로는 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 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둔덕을 쌓는다.
- (사) 매몰 후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는 매몰된 사체의 병명 및 축종, 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책임관리자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매몰지가 유실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빗물 배수로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으로 사체를 대규모로 매몰해야 하는 경우로서 (1)의 방법으로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게 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 (가) 매몰 구덩이의 바닥과 측면에는 점토광물과 흙을 섞은 혼합토(혼합비율 15:85)로 충분하게 도포(바닥 30cm 이상, 측면 10cm 이상)한 후두께 0.2mm 이상인 이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여야 하며, 이중비닐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중비닐 훼손방지를 위하여 부직포, 비닐커버 등을 추가로 덮어야 한다. 다만,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고강도 방수재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토 도포, 부직포, 비닐커버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 (나) 매몰 구덩이의 경사진 바닥면 하단에 침출수 배출관[(유공관(有孔管)으로서 상부에는 개폐장치가 설치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여, 집수

된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한다.

- (다) 저류조의 용량은 0.5㎡ 이상으로 하되, 경사 아래쪽 중에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만들고, 수시로 소독제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한다.
- (라)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가 유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몰지 내부와 매몰지 경계에서 외부와의 이격 거리 5m 이내 인 곳(지하수 흐름의 하류방향인 곳을 말한다)에 깊이 10m 내외의 관측정을 각각 설치하며, 관측정의 수질측정, 결과해석, 보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관측정 수질측정 결과에 따른 이설 등 매몰지 조치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몰지 내부에 설치하는 관측정은 (나)의 침출수 배출관을 활용할 수 있다.
- (3) 사체를 랜더링(rendering)처리시설(열처리정제시설)에서 열처리하여 그 잔재물을 매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 8조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체 등의 운반

- (1) 사체 등은 핏물 등이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운반차량을 사용하여 소각·매몰등의 목적지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 (2) 사체 등의 소각·매몰등을 위한 목적지 출발 전과 목적지에 도착하여 사체 등을 하차한 후에 동 운반차량 전체를 고압분무세척 소독기 등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3) 동 운반차량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담당공무원이 탑승하여 사체 의 소각·매몰등을 위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별표 6] <개정 22011.7.25>

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제26조제1항관련)

- 1. 가축의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후 남은 뼈와 재를 소각지 등의 장소에 별표 5의 매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2. 가축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한다.
- 가.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다시 매몰하고 2미 터 이상 흙을 쌓는다.
- 나. 사체의 매몰지가 안정되기 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을 비닐로 덮는다.
- 다. 사체의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흘러나오거나 저류조에 수집된 때에는 톱 밥을 충분히 뿌려 침출수를 흡수하게 한 다음 수거하여 재매몰 또는 이송처리하고, 생석회 등으로 소독을 한다.
- 라. 매몰지로부터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배출관을 설치하되, 배출관은 "U"자 형태로 하여 그 끝을 지면으로 향하게 한다.
- 마. 매몰지에는 악취제거를 위하여 침출수 배출관과 가스 배출관 주위에 탈취 제와 톱밥을 뿌려주며, 약품이나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한다.
- 바. 매몰지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매몰지 점검 및 매몰지 의 함몰·훼손 등의 경우에 보완조치를 한다.
- 사. 매몰지 점검결과 사면붕괴(斜面崩壞) 또는 침출수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의 정비 및 보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다.
- 3. 가축의 사체를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7.25>

	소독실시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									
۲	.]설명			7L-1-1						
	- ¬11 →1				(<u>企</u>)	가자 또는 국	변디사	(71-	<u> </u>	
	·재지					.1 =1		(전호	삭 :)
			소	<u>독</u> 실	! 시 ·	상 황			,	
연월일	소독실시다 (차량번호,		소독종류	소독	·약품	소독장비	소독실	시자	비 (대상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표 7] <개정 2011.6.15>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37조제4항관련)

1. 지정검역물의 검역

- 가. 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 을 경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는 그 생산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 동물인 경우에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식용축산물인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의 전파가능성 여부와 관능검사(官能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다. 검역관은 수출되는 지정검역물 중 가공과정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검사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 라.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마. 검역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에서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에게 현물검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하고,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은 현물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생조건 및 검역증명서

- 가. 검역관은 우리나라와 지정검역물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간에 검역에 관하여 협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나.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 역증명서와 지정검역물이 합치하는지를 대조하여야 한다.
- 다.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는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원본(부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 3.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에 대한 검역은 제1호를 준용하여 할 수 있다.
- 4.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한다.
- 5.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관리축 산물은 검역검사본부장 정한 요령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차링	후의 종류			ź	차량의 소유	우자							
차링	후의 용도				차량번호	- -							
차고	· 소재지		· (전화:)										
	<u> </u>	소 독 실 시 상 황											
연월일	소독장소	소독종류	소독역	ᆤ품	소독장비	소독실	시자	비고					
									_				
									_				
									_				

210㎜×297㎜(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자 제7호의2서식] <신설 2012,2,8>

출입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

시설명					대표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전화번호 :)						
	출 입 기 록 현 황												
연월일	도착시간	출발시간	차량번호	운전기사 및 방문자	방문 목적	소독여부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m/ 또는 중질지 80g/m/]

[별표 8] <개정 2012.2.8>

<u>검역기간</u>(제37조제4항 관련)

검역물의 종류	수출	수입
1. 개·고양이(제11호 및 제12호의	1일	1. 생후 90일 이상인 경
동물은 제외한다)		우
		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
		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인 경우:
		당일
		나.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 마이
		크로칩 이식 완료일까
		지
		- '' 다. 광견병 중화항체검사
		를 하지 않은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mul
		이상 확인일까지
		라. 중화항체가가 0.5IU/
		ml 이하인 경우: 중화
		항체가 0.5IU/ml 이상
		확인일까지
		마.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항체검사
		를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
		건병 예방접종 후 중
		화항체가 0.5IU/ml 이
		상 확인일까지
		2.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 지역산
		은 마이크로칩을 이식
		하여 개체 확인이 되는
		경우: 당일, 다만, 마이
		<u> '성구· 성본, 년단, 미</u> 에

「가 <u>.</u>

[별지 제8호서식]

제 :	হ	격	리·억류·	이동제한	··소독·교	통차	단•	출입통제	명령	서		
가축 사육시		冶	장 명				2	산 재 지				
소유자		성 명					주민	<u> </u>	호			
(관리	자)	주 소								(전화 :)
DI TI A	.11.0	명령	의 구분				ī	명령의 이유				
명령의	내용		령이행 강 소		이항	기간			명령 대상	이행 두수		
	가	ā	축 종	품종	성 별	연 :	령	귀표(개 번 호		<u>특</u> 징	비그	1
명 령	∠ r	<u> </u>										
대 상	사	람										
	차	량										
준 수 /	사 항											
								ŀ단∙출입⊹ ≟	통제	22조제1항: 를 명합니다 수·구청장	∤ .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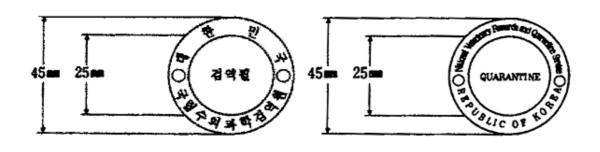
		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
		으고합 기기는 기기 (B 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는 81세는 취이크로 칩 이식 완료일까지로
2. 우제류동물(제11호 및 제12호의		한다.
	7일	15일
동물은 제외한다) 3. 기제류동물(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5일	10일
4. 기제류동물 중 교미시험용 종마 및		
암말(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5일	 40일 이내
제외한다))	1 02
시되었다) 5. 영장류(non—human primates, 제11		
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1일	30일
6. 닭·칠면조·거위·오리(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2일	10일
7. 휴대 애완조류(제11호 및 제12호	1	
의 동물은 제외한다)	1일	5일 이내
8. 병아리(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	4.01	1001
은 제외한다)	1일	10일
9. 초생추를 포함한 타조류(제11호 및	101	0001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1일	30일
10. 그 밖의 동물(제11호 및 제12호	4.01	501
의 동물은 제외한다)	1일	5일
	회복 후(살처분	-1 년 중/21의 H F1121 -11
11.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	대상 제외)10	회복 후(살처분 대상 제
	일	외) 10일
12.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		
릴 우려가 있는 동물 및 이와 함		병에 전염되지 아니하였음
께 사육동물(제11호의 동물은 제외	을	
한다)	확인할 수 있는	기간까지
13. 닭 종란	2일	21일
14. 오리 종란	2일	28일
15. 타조 종란	2일	42일
16. 돼지정액(오제스키병 원인체 검사	2일	18일 이내
대상)		
17. 소정액 18. 제31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	2일	3일 이내
지의 지정검역물	2일	3일
지의 시청점극물 19. 제31조제1항제13호의 지정검역물	5일	10일
20. 메추리 종란	2일	17일

21. 말정액	2일	30일 이내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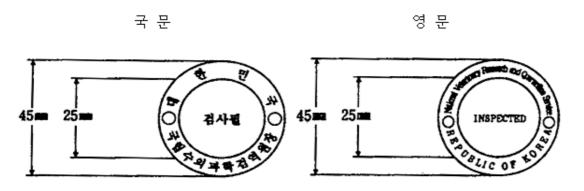
- 검역검사본부장은 수입시 상대국의 가축방역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검역조건에 따라 수출동물 및 수출축산물의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별표 9] <개정 2011.6.15>

검역필증인(제41조제4항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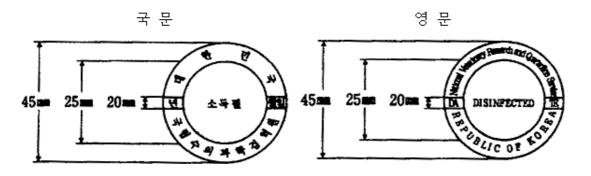
검사필인란



비 고 : "○○"표시란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명칭을 삽입한다.

[별표 10] <개정 2011.6.15>

<u>소독필증인</u>(제41조제4항관련)



[별지 제9호서식]

제 :	호			살기	서분명령서	1					
가축사육	·시설	뇽	장 명			소 ス	배 지				
성 명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관리	자)	2	주 소					(전호	}:)	
살 처 명령의		살처	분 이유		두수		0]:	행기한			
살 처 분 명 령 대	축	종	품 종	성 별	연 령		포(개체) 번 호	특	징	비고	
상가축											
준 수 /	나 항										
				제1항(제2 할 것을 명 년		동법시호 일	벙규칙 조	네23조기	네2항:	의 규정	
						17 sm sm (군수·구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가 <u>.</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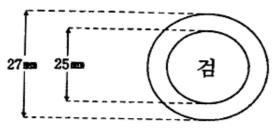
[별지 제10호서식]

제 :	호			도 태	권 고 2	4				
가축사육	A 시설	농	장 명			소 재	지			
소유	자	ڔ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관리	자)	주 소						(전화	:)
도태권 내 9			태권고 이유		두수		이행	기한		
대상가축	축	종	품 종	성 별	연 령		개체) 호	특경	3	비고
축										
도태지경 출하시설	ース]설(업체명)				소재지	(전화	:)
준수/	나 항			•				•		
				제1항(제28 것을 권고협 년		동법시행-		24조제2 수·구청		리 규정 [인]
위의 도태권고에 따라 출하된 가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태(도축·재활용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도태실시 시설명: 2. 도태두수: 두 3. 도태실시일자: 년 월 일 년										
확인자 :	: 소속	-	직위 :	또는 직급	성명		(2	서명 또 ?	는 인	1)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표 11]

검역필낙인(제41조제4항관련)



[별표 12] <개청 2011.6.15>

<u>검역물포장봉합표</u>(제41조제4항관련)

(담청색)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Republic of Korea



4 — 9cm — ▶

「가 <u>.</u>

[별지 제11호서식]

게 호 ○○○ 귀하 (우편번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지 ○시설에 대하여 다음	네27조 및 동법	소 법시행규칙	제29조	의 규정에 따) 라 귀하의 C
시 설 명					
정지(제한)의 범위					
정지(제한)의 이유					
	년	월	일	시장·군수·구	청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6.15>

(앞 쪽)

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수입허가신청서							
시험인구·예정:		15 일					
품 명							
면 이							
수량 및 포장수량(중량)							
산 지 또 는 사 육 지							
수 송 방 법 및 경 로							
(우편물의 경우 발송지)							
수 입 목 적							
보내는 사람의 성명·주소							
받는 사람의 성명·주소							
수입예정항(비행장) 및							
도착예정연월일							
수 송 중 포 장 상 태							
수송후 관리방법 및 장소							
이용기간 및 이용후 처리방법							
수입후의 관리책임자							
성명·주소							
그 밖 의 참 고 사 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주소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주소·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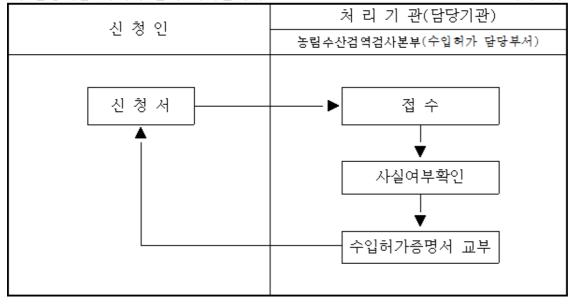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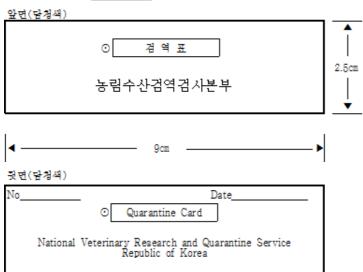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표 13] <개정 2011.6.15>

<u>검역물꼬리표(제41조제4항관</u>련)



(뒤 쪽) (Back)

도착예정일: . . . 도착함: (Estimated date of arrival) (Arrival port)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주소: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6.15>

(앞쪽) (Front)

수입허가증명서

(CERTIFICATE FOR IMPORT PERMIT)

,	
수입허가번호	_
Import permit No.	_
수입허가일자	
Date of issue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수입허가를 받은 것임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mport permit was obtained as the follow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Act" and Item 3 of Article 32 of "its Enforcement Ordinance".

신청인 성명·주소	
(Name & Address of applicant)	
동물의 종류·품종 또는 물품의 종류	
(Species of animal or Kind of	
article)	
두수 또는 수량	
(Total head or quantity)	
보내는 사람의 성명·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or)	

주의(Remarks)

- 1. 위의 동물 또는 물품의 발송시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In consigning the above animals or packages in which the above articles are packed, they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is certificate.
- 2. 보내는 사람은 위의 화물을 이 증명서와 같이 뒤쪽에 기재된 농림수산검역검 사본부(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The consignor should address the above commodities to the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or regional office or district office thereof) indicated on the back of this certificate along with this certificate.
- 3. 받는 사람은 위의 화물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이 행한 검사를 받은 후 수취하여야 합니다.

The consignee should receive the above commodities after the completion of inspection at the above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or regional office or district office there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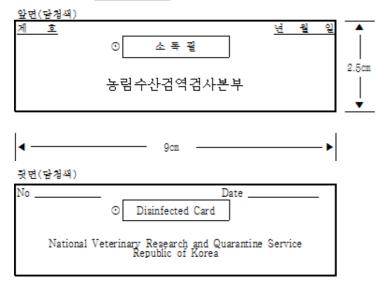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인]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REPUBLIC OF KOREA OFFICIAL SEAL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표 14] <개정 2011.6.15>

<u>소독물의 꼬리표</u>(제41조제4항관련)



「가 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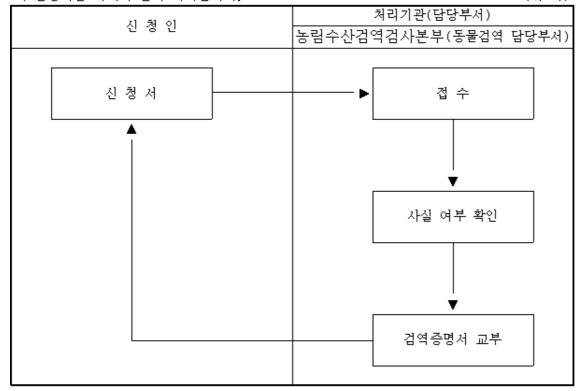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6.15>

(앞 쪽)

	(= 7
동 물 검 역 신 청 서	처리기간
(APPLICATION FOR ANIMAL QUARANTINE)	뒤쪽참조
①신고번호 ②신고일 (Date)	1
③신고기관 ④B/L번호 (B/L No.)	
⑤입항일 (Date of arrival) (Name of ship or flight)	
⑦ 성명 상호 수입 (Name) (Company name)	
화주 주소 (Consignee) (Address)	
8 (Name) (Country of export) 수출자	
(Consignor) 수소 (Address)	
⑩거래품명 ⑪모델·규격 (Species and breed) (Sex, Age, color, etc.)	
②수량 ③금액 (Number of head) (Total cost)	
(B생산국 (Country of production)	
<16>선적항 <17>선적일 (Port of shipping) (Date of shipping)	
<18>담당자	
위와 같이 동물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nimal. 년(Year) 윌(Month) 일(Date)	
검역신청인 (한글)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Applicant for Quarantine (영문) Name and Signature : Address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To Directo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	су)
* 구비서류 :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 수= 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수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가축전염병예 해당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2. 수입허가증명서 1부. 식풍부령으로 정	따라 농림수산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처리기간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8 참조

○ 작성요령

① 신고번호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신고일 : 해당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신청하시는 일자 기재

③ 신고기관: 관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 기재 ④ B/L번호: 선하증권(B/L)번호 기재(수입에 한하며, 없는 경우 공란)

⑤ 입항일: 입항일자 기재

⑥ 선(기)명 : 해당검역물이 선적된(선적될) 선박·항공기명을 영문으로 기재

⑦ 수입화주 : 해당검역물의 화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⑧ 수출자 : 상대국에서 해당검역물을 발송한 화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③ 수출국 : 해당검역물을 수출하는 국가명 기재

⑩ 거래품명 : 해당검역물의 품명(종류 또는 품종) 기재

① 모델·규격 : 해당검역물의 성별, 연령, 털색 및 암, 수 구분하여 두수 기재

⑩ 수량 : 해당검역물(동물)의 두수 기재

® 금액: 해당검역물의 수입금액(US\$) 기재

⑥ 도착항 : 해당검역물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항구명(공항포함) 기재

(B) 생산국 : 해당검역물이 생산된 국가명 기재

<16> 선적항 : 해당검역물이 선적된 항구명(공항포함) 기재

<17> 선적일 : 해당검역물이 선적된 일자 기재 <18> 담당자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표 14의2] <개정 2012.2.8>

<u>검역시행장 시설기준</u>(제42조제5항 관련)

1. 수입 동물 검역시행장

<u> </u>	구입 공물 김역시		
	구 분	시 설 기 준	비고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 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검역준비실	검역준비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실험용 동물의 경우 수동식분 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 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로 기존의 사육 동물과 격리된 장소이어야 한다.	
3.	계류시설	1) 수입동물에 따라 전두수가 안전하게 사양관리 될 수 있는 견교한 시설로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로 오물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L		2) 계류시설 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격리축사	환축 격리용 축사로서 검역용 축사와 동일한 구조로 하되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5.	분뇨 및 오물	검역기간 중 동물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	
	처리장	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6.	출입구 소독조	출입구에는 방역상 필요한 소독조를 비치하여야 한다.	
7.	보정시설	동물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위한 보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종업워 탈의심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 및 검역보조요원의 탈의 및 세척시 설이 있어야 한다.	
9.	출입제한	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 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2. 수출 동물 검역시행장

		100	
	구 분	시 설 기 준	비고
I1 건역수비식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		
	서 검역상 필요한 아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3. 계류 시설	1) 수출동물이 안전하게 사양관리 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 로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로 오물수거와 수 세 및 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2) 계류시설 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격리축사	환축 격리용 축사로서 검역용 축사와 동일한 구조로 하되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5. 보정 시설	검역동물에 따라 검사 및 처리를 위한 보정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6. 종업원 탈의실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 및 검역보조요원의 탈의 및 세척시 설이 있어야 한다.	
7. 출입구 제한	출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 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8. 기타	수입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요 건조건에 준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3. 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

<u>J.</u>	<u> </u>		
	구 분	시 설 기 준	비고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 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거예즈비시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자비소독기, 냉장고, 액량계 등	
1. 검역준비실	쉽극판미걸	2) 소독약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곳으로 기존의 사육동물과 격리된 장소이어야한다.	
3.	계류시설	1) 야생조수류를 안전하게 사양관리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바닥은 견고한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다만, 동물의	

	특성상 적합한 시설일 경우는 제외)로서 오물수거와 수 세 및 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야수 류 동물의 수입상자 우리 등이 안전하게 수용될 수 있도 록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출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격리조사	환축 격리용 축사로서 검역용 축사와 동일한 구조로 하되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검역기간 중 동물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 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6. 종업원 탈의실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 및 검역보조요원의 탈의 및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17 중입구 제한	출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 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있어야 한다.	

4. 초생추(병아리, 오리, 타조 등) 검역시행장

	포 O T (O 기의, -	보다, 너도 공/임극시경경	
	구 분	시 설 기 준	비고
1.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 서 검역상 필요한 아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소의 위치	검역시행장소는 지정 계류사의 반경 50m 이내에 양계장, 도계장, 부화장, 계분처리장, 사료공장 등 관련시설이 없 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창이 없는 계사 또는 고정창문 계사로써 출입구조가 2 중문으로 되고 계류사내에 탈의시설이 있는 경우 2) 해안, 하천 등 지리적 여건상 고립 또는 자연적인 격 리가 가능한 경우	
3.	검역계류 시설	1) 계류사는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며, 주위는 철조망 등으로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계류사 및 사료창고의 창문 및 환기창 등은 방충, 방서의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탈의실 및 세척 시설은 계류사내 또는 계류사에 인접하여 있어야 한다.	

	4) 출입구 소독조는 장화를 충분히 소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수세 소독조를 계류사 출입구에 비치 하여야 한다.
4. 계류사의 구조	1) 계류사의 전용면적은 병아리의 경우 330㎡(1회 10,000수 수용규모) 이상, 오리의 경우 200㎡(1회 2,000수 수용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이환 축사를 별도 구획 설비하여야 한다.
5. 오물처리장	2) 바닥과 벽은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검역기간 중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 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6. 소각장	폐사체, 오염물 등을 방역상 안전하게 소각할 수 있는 시 설이 있어야 한다.
7. 출입 제한	검역시행장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 및 사료 등의 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있어야 한다.
8. 전임관리인 숙소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를 위한 전임관리인 숙소가 있어야 하 되 동 숙소는 가능한 계류사에 인접되어 있어야 한다.

5. 실험동물(SPF) 검역시행장

2. 골립으론(2bb)	됩니시 878	
구 분	시 설 기 준	비고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 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 다.	
1. 검역준비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자비소독기, 냉 장고, 액량계 등 구비	
	2) 소독약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의 위치	가축 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로 주변 50미터 이내에는 동물 관련시설(동물 사육시설, 도축장, 집하장, 사료공장 등)이 없는 격리된 장소이어야 한다.	
3. 계류시설	수입동물이 안전하게 사양 관리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 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재질로 오물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4. SPF 실험 동물의 사육시설	계류사는 각각 구획되어 창이 없는 설비로서 폐쇄되어 외 부로부터 가축전염성질병이 건물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벽(Barrier System)을 갖춘 시설로 실험동물 (Specific Pathogen Free) 계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외부로부터 미세먼지를 차단하여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여과시설(Filter) 및 자외선(Ultra Violet) 소독시설이 되어있는 공기 환기관 이 설치되어야 한다.	
	2) 사람에 의한 가축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철저한 개인위생을 위한 샤워·수세 및 탈의시설을 거쳐 사육시설로 출입이 되도록 샤워·수세 및 탈의시설이 있어야 한다.	
	3) 멸균된 음수 및 사료가 공급되도록 벽면 멸균기를 통하여 멸균처리 되어 공급되거나, 멸균된 음수 및 사 료가 오염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4) 관리 장비 및 비품·도구 등은 자외선 소독 등을 하여 가축 전염성질병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창이 없는 시설로 외부로부터 쥐·곤충 등의 동물의 유입이 불가능하도록 완전 폐쇄된 시설이어야 한다.	
5. SPF 실험동물의 사 육환 경	실험동물별 특성에 따라 습도, 온도, 사육면적 등 사육환 경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6. 분뇨 및 오물처리장	검역기간 중 동물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하며, 사육시설이 가축전염성 질병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보정시설	동물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위한 보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출입제한	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 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6.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구 분	시 설 기 준	비고
	검역관 또는 관리수의사가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	
1. 검역준비실 또	에 편리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아래 물품을 비치하여	
는 관리수의사실	야 한다.	
	1) 기자재: 전기톱(육절기를 포함한다), 전기드릴, 알코	

	올램프, 끌, 심부온도계, 적외선온도계, 자비소독기, 액 량계, 저울(100kg), 동력분무기, 수동분무기, 칼, 이동 검사대(조명등이 있는 비부식성 내수성재질로서 가로 120cm×세로60cm×높이90cm이상), 이물검출기 또는 금속탐지기,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방한복, 방한화, 방한모 등	
2. 보관시설	1) 보관시설의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않아야 하며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불침투성 물질로 축조되어야 한다. 2) 보관시설은 유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거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검역물 적재에 필요한 충분한 깔판을 보유하여야 한다.	
3. 보관온도 및 수용능력	냉동축산물 보관창고의 유지온도는 영하 18도 이하, 냉장 축산물 보관창고의 유지온도는 영하 2도 ~ 10도이어야 하고 충분한 수용능력이 있어야 한다.	
4. 종업원탈의실,	종업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탈의질과 수세시절이 있	
세면장 및 화장실	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5. 기타	검역용 기자재는 검사 목적에 따라 검역시행장 내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7. 워피 및 동물의 털 보관장 검역시행장

1. 선찍 ㅊ ㅇㄹㅋ	늴 보편경 심극시장성	
구 분	시 설 기 준	비고
	사무집행과 가검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	
	된 시설이 있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	
	하여야 한다.	
1. 관리수의사실	1) 기자재: 냉장고, 자비소독기, 액량계, 알콜램프, 시료	
	채취 기구 등	
	2)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곳이어야 한다.	
	1) 소독기구: 고압동력분무기 1대, 수동식 분무기 1대,	
3. 검역장비 및	연막소독기 1대등	
소독약품	2) 소독약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비치	

「가 _

_			
4.	4. 차량 소독조	검역시행장 차량 출입구에는 차륜이 소독될 수 있는 소독	
		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	1) 출입구에는 충분한 용적의 소독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토록 하여야 하며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4) 검역물 적재를 위한 깔판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은 방충, 방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수모류(모피를 포함한다)전용보관창고에는 훈증소독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배수시설	배수로는 안전하게 복개되어야 하며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종업원탈의실, 세	종사원의 탈의, 수세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실을	
Ļ	변장 및 화장실 등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	
	÷ 01 = -11=1	검역시행장의 외부 격리구획의 입구는 출입자의 통제가 용	
9.	출입구 제한	이하도록 1개 지역으로 제한하며, 다른 출입구는 출입이 제 한될 수 있도록 차단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8. 수입 원피 및 모피 가공장 검역시행장

<u> </u>	써 //동경 심극시성경	
구 분	시 설 기 준	비고
	사무집행과 가검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	
	된 시설이 있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	
, 740d 71510121	하여야 한다.	
1. 검역관리인실	1) 기자재: 냉장고, 자비소독기, 액량계, 알콜램프, 시료	
	채취 기구 등	
	2)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이 건에기하다 이를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	
2. 검역시행장 위치	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	1) 소독기구: 고압동력 및 수동분무기, 연막 소독기 각 1대	
	2) 소독약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4. 차량 소독조	검역시행장 차량 출입구에는 차륜이 소독될 수 있는 소독	
	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구에는 충분한 용적의 소독조를 갖추어야 한다.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병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토록 하여야 하며 	
5. 검역시설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4) 검역물 적재를 위한 깔판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5) 검역물 보관을 위한 창고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모피가공장에서는 포르말린가스 및 밀폐소독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검역물 상하차 작업장소 및 보관장소로부터 가공장소까지	
6. 작업통로 시설	이동에 이용되는 모든 통로는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불침투성 물질로 설비되어야 한다.	
7. 페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검역시행장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수는 정화시설로 배	
8. 배수시설	출되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배수시설은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종업원탈의실,	종사원의 탈의, 수세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실을	
세면장 및 화장실 등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	
	검역시행장의 외부 격리구획의 입구는 출입자의 통제가	
10. 출입구의 제한	용이하도록 1개 지역으로 제한하며, 다른 출입구는 출입	
	이 제한될 수	

9. 수출 원피류 및 동물의 털 가공장 검역시행장

구 분	시 설 기 준	비고
1.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 액량계, 소독실시에 충분한 성능을 갖춘 소독기구 등 2) 소독약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3. 검역시설	1) 검역창고의 출입구에는 충분한 용적의 소독조를 갖	

	추어야 한다.	
	2)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	
	며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4) 검역창고는 환기, 방충, 방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출입구의 제한	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쉽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5. 기타	수입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요 구조건에 준한 시설을 하여야한다	

10.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

10. 역표/(등등 점 - 구 분	시설기준	비고
	사무집행과 가검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	
	된 시설이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	
) 야 하다.	
	1	
	->	
1. 관리수의사실	S 본러본 현용대 본교인 기자제(다년, 본모 본러본다 있는 경우는 예외), 이물검출기 또는 금속탐지기, 컴퓨	
	2) 소독약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위생모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전파방지 및 육류의 위생처리에 필요한 시	
	설을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1) 작업장의 주위환경은 매연, 먼지, 악취, 공기오염 등	
3. 검역시설 주위	으로 축산물 위생처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주차장 및 차도 등은 먼지발생이 없도록 완전하게 포장	
	하여야 하고 배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1) 작업장 넓이는 작업에 충분한 면적이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작업장 바닥은 타이루, 콘크리트 등 내수성자재를 사	
. =164 .1.1	용하고 청소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4. 검역 시설	 3) 작업장 내벽은 내수성자재를 사용하고 바닥에서 최	
	소한 1.5미터까지는 타이루,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	
	조근 130시리까지는 국가가, 는그러고 조는 하되 까지 한 자재로 사면를 축조하고 청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	
l	다.	

- 4) 천정은 내수성 재료 등을 사용하여 낙진을 방지하고 청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 5) 작업장 출입구는 자동 또는 반자동 개폐식으로 하고 소독조를 설비하여야 하며 창문은 바닥에서 1미터 이 상 되어야 하며 방충·방서시설을 하여야 한다.
- 6) 채광, 조명이 충분하여야 하고 환기시설이 되어 있어 야 한다.
- 7)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관련 규 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8) 사용에 편리한 위치에 위생적인 수세설비와 기계, 기 구류의 세척시설 및 소독시설이 있어야 한다.
- 9) 축산물을 처리·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용기 등에 관한 규격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10)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 질(스테인리스·알루미늄·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11) 기구, 용기류 등을 보관 사용할 수 있는 이동 또는 고정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 12) 작업장내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13)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14) 가공장은 제조과정별 작업대로 각각 구획되어야 하며 실내온도가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조절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5) 기계, 기구류는 작업에 편리하고 청소 및 세척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벽 및 바닥으로부터 일정 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16) 소독위생 및 악취제거 등을 위한 기구 약품을 상비하여야 한다.
- 17) 냉동실(영하 18도이하), 냉장실(영하 2도 ~ 10도) 은 규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탈의실	종업원 수에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 및 옷장이	
0. 필쉬필	따로 있어야 한다.	
	1) 화장실, 오물처리장 등은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	
	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종업원 수에 적당한 설비가	
o =17121	되어 있어야 한다.	
6. 화장실	2)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소독조와 세면장이 있어야 하	
	고 방충, 방서 환기시설을 하고 위생적인 수세식 설비	
	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이 있을 시에는	
	요구조건에 준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관리수의사실을 구비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7. 기타	따른 HACCP 인증을 받은 작업장은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검역용 기자재는 검사 목적에 따라 검역시행장 내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11. 수입 수모류(깃털 포함) 가공장 검역시행장

<u>11. 수입 수모듀(깃</u>	[털 포함) 가공상 검역시행상
구 분	시 설 기 준 비고
	사무집행과 가검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
	된 시설이 있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
	하여야 한다.
1 740471-10141	1) 기자재: 천칭, 액량계, 동력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1
1. 검역관리인실	대, 냉장고, 수동식동력분무기 1대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B. 8 77 00 1171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3. 차량소독조	검역시행장 차량출입구에는 차륜이 소독될 수 있는 소독
0. 102 12	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검역창고의 출입구에는 소독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4. 검역시설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4) 검역창고는 환기, 방충, 방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5) 가공장내에는 수모류(깃털 포함)를 세척 탈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훈증소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검역물 상하차 작업장소로부터 보관장소까지 이동에 이용	
5. 작업통로의시설	되는 모든 통로는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불침투성	
	물질로 설비되어야 한다.	
6. 페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검역시행장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수는 안전하게 정화시설	
7. 배수시설	로 배출되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배수시설은 방역상 안	
	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정화조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종업원탈의실,	종사원의 탈의, 수세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대기실을 갖	
세면장 및 화장실 등	추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	

12. 수출·입 종란 검역시행장

10. 12 H O U		
구 분	시 설 기 준	비고
1. 검역준비실	검역준비실은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이	
	쉬운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	
	다.	
	1) 기자재: 냉장고, 소독기, 액량계 등	
	2) 소독약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소독약을 선택적으로 비치(포르말린가스 소독약, 차	
	아염소산나트륨, 크레졸비누액 등)	
2. 검역시행장위치	검역시행장은 주변이 청결하여야 하며, 양계장·도계장과	
	다른 부화장 등 관련시설과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3. 검역계류시설	1) 부화장은 수입종란을 단독으로 보관, 소독, 검란, 부	
	화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부화장의 출입구에는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와 수세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부화장은 방서, 방충시설이 있어야 한다.	
	4) 부화장은 고정건물(판넬, 콘크리트 등으로 건축)	
4. 폐기물 처리	검역물 수송상자, 난각, 이상란 불합격품, 약추 등을 방역	
	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5. 출입자 통제	부화장은 검역기간 중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6. 기타	수입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이 있으면 요구조건에	
	준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71

13. 천연케이싱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비고
1. 관리수의사실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 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가, 기자재: 액량계, 소독실시에 충분한 성능을 갖춘 소	
	독기구 등 나. 소독약품: 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다.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3. 검역시설	가. 검역창고의 출입구에는 충분한 용적의 소독조를 갖추어야 한다.나.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라. 검역창고는 환기, 방충, 방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마.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리스・알루미늄・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한다. 바. 검역장소는 반입창고, 소독실, 반출창고를 갖추어야하며 작업장의 면적은 생산능력에 비례하여 확보하여야한다. 사. 소독실은 그 바닥이 오수 등이 침투하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 반입구 및 반출구를 각각 별개로하여야하며, 소독조는 18℃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	
4. 출입구의 제한	또는 장비를 갖추고 불침투성 재료이어야 한다. 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쉽도 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5. 종업원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등	종사원의 탈의, 수세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	

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6. 배수시설	검역시행장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수는 안전하게 정화 시설로 배출되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배수시설은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정화조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그 밖의 사항	수입금지 지역산 천연케이싱 소독과 관련하여 관할 검역 검사소장은 검역시설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검역시행 장으로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 수입 돼지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비고
1. 공통시설	수입돼지 동물검역에 필요한 기타 검역시설은 별표 14의 2 제1호의 수입동물 검역시행장 시설 기준에 따른다.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막을 수 있는 다음 시설이 있어 야 한다.	
2. 소독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 치하고 출입구에는 전신소독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검역준비실,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축사입구에는 소독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검역시설	검역시행장의 외부와 차단될 수 있는 담장이 설치되어야 한다. 가. 수입돼지, 사료 등의 상하차가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	
	여야 한다. 나.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가축전염병 비 발생	검역시행장으로 지정 받고자하는 장소는 최근 1년간 구세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마이코플라즈마페렴, 돼지써코바이러스, 살모넬라병 및 흉막페렴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5. 관리인 숙소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를 위한 관리인 숙소가 있어야 하 되 동 숙소는 가능한 검역시행장 내부에 있어야 한다.	
6. 그 밖의 사항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14의3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 중 해당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사양관리사항 및 방역관리 계획 등을 관할검역검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그 밖의 검역시행장: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품목인 경우에 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해당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14호까

[별표 14의3] <개정 2011.6.15>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제42조의3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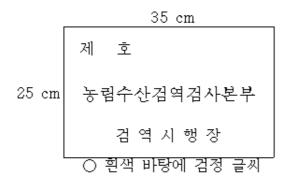
- 1. 검역시행장 내 소독 및 작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 2. 검역시행장에 입출고되는 검역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청결 유지, 소독·살충 등 검역관·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2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아야하는 자는 해당 지정검역물이 검역시행장에 입고하기 전에 그 내용을 방역본부에 알려야 한다.
- 3.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이 검역업무 수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검역 시설 및 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4. 축산물가공장인 검역시행장에서는 검역이 완료된 후 같은 시설에서 가공하여야 하고, 다른 장소로 운송하려면 검역관에게 알린 후에 운송하여야 하며, 수출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에 따른 수출 검역물 운송 통보서(신청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이동은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하여야 하고. 지정검역물 외의 화물과 혼적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6. 검역시행장의 시설 및 지정검역물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과리하여야 한다.
- 7. 동물검역시행장은 별지 제17호의12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13서식에 따른 관리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검역기간 중 폐사한 동물 및 파기된 종란은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8.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별지 제17호의14서 식에 따른 수입화물(검역)표를 선하증권(B/L)단위로 부착하여야 한다.
- 9. 검역시행장 출입구와 검역물을 보관하는 시설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는 별표 14의4에 따른 간판을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 10. 축산물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도축장 또는 식육가공장 등)에서는 종업원 등이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화를 착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 11. 축산물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에서는 원료로 사용되는 지정검역물(검역완료품 포함)이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에는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관리를 받아야 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12. 검역이 종료되지 아니한 검역물을 사용하거나 검역시행장 밖으로 유출하여 서는 아니된다.

- 13.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 및 식육보관장 검역시행장은 검역물량 파악 제출 등 검역검사본부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5.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과 현물을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및 방역조치 등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 16. 검역검사본부장이 실시하는 검역관련 교육 등에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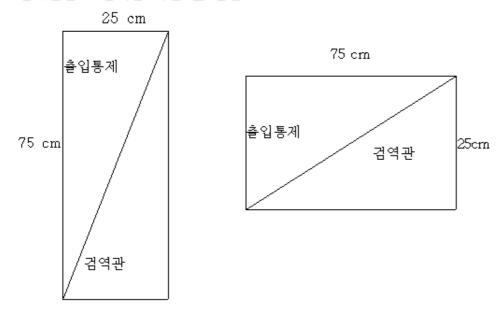
[별표 14의4] <개정 2011.6.15>

검역시행장 출입구 통제간판 규격(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14의3 관련)

1. 검역시행장 출입구 간판



2. 검역물을 보관하는 시설 앞 간판



○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 붉은 사선 2줄

[별표 14의5] <개정 2011.6.15>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제42조의3제4항 관련)

수입초생추의 검역은 해외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검 역검사본부 및 초생추 검역시행장이 소재한 가축방역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

- 1. 검역검사본부장은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검역시행장 내 수입초생추의 입고 전과 출고 후에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검역원장은 수입초생추의 검역기간 중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역학조사 및 임상관찰, 관리인의 사양관리일지 확인
 - 나. 폐사추, 오물, 배설물 등에 대한 소각 매몰 등의 방역조치
 - 다. 그 밖에 검역상 필요한 사항
- 3.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시설에는 해당 초생추 외에는 입고 전 30일부터 검역종료시까지 가금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
- 4. 검역검사본부장은 수입초생추의 검역종료 즉시 초생추 검역시행장 관할 시·도 지사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검역장소

나. 축주명

다. 품종

라. 수수

마. 원산지

바. 도입일자

사. 검역종료일

아. 예방접종등 기타 특기사항

- 5. 검역검사본부장으로부터 초생추의 검역종료 사실을 통보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초생추에 대하여 검역이 종료된 날로 부터 60일간 다음과 같은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수시 임상관찰 및 필요시 혈청검사 또는 병성감정 등의 실시
 - 나.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질병 발생시 격리·이동제한 및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 사항을 시·도지사 및 축주에게 보고(통보)
 - 다. 예방접종 권장 및 지도

[별표 15] <개정 2011.6.15>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사양 및 보관관리기준

(제43조제1항관련)

1.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의 설비조건

구분	설비조건
동물	 가. 화물칸은 동물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차 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오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동물 수송중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간격의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화물칸 상부에는 태양광선·비·눈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차폐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다. 화물칸은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라. 차량후면은 개폐식 문으로서 오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앞좌석에는 수송중 동물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안전창이 있어야 한다.
축산물	가.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는 수송중 오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봉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나. 수송중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등이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 외부로 퍼뜨려지지 아니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2. 지정검역물의 입출고조작, 사양 및 보관관리기준

- 가. 사양관리인과 보관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은 지정검역물을 검역시 행장에 입·출고하는 때에는 그 품목명, 검역종료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 나. 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품목명, 입고일시, 검역종료여 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다. 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라.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은 검역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출고할 수 있다.
- 3. 그 밖의 지정검역물의 입출고조작, 사양 및 보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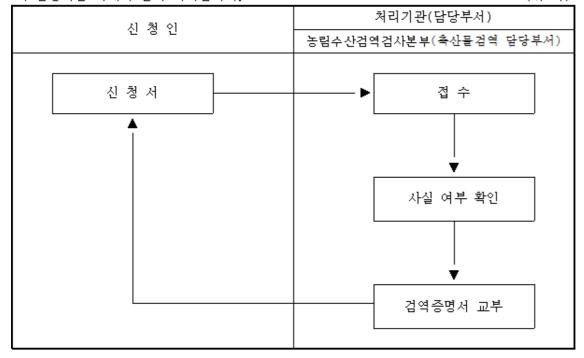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6.15>

(앞 쪽)

축 산 물(사료 등) 검 역 신 청 서 [APPLICATION FOR ANIMAL PRODUCTS(FEEDSTUFF etc.) QUARANTINE]					'	(표 구)
③신고기관 (의 전 (Date) (의 전 기관 (의 전 (Date)) (의 전 (Date)) (의 전 (Date)) (의 전 (Date)) (의 전 (B/L No.) (의 전 (B/L No.) (의 전 (Address)) (의 전 (Address)) (의 (의 (Address)) (의 (의 (의 (Address))) (의 (의 (의 (의 (교 (Address)))) (의 (의 (의 (의 (교 (Address)))) (의 (의 (의 (의 (교 (교 (Address))))) (의 (의 (의 (의 (교	[APPLICAT	-		-	ARANTINE]	기간 뒤쪽
(B/L No.) (화물관리번호 (MRN-MSN-HSN) (Date of arrival) (구입화주 성명 (Date of arrival) (Consignee) (Name) (Address) (B)수출국 (Name) (Address) (B)수출국 (Name) (Country of export) (Type of products) (Total cost) (B)주중당 (Type of arrival) (Name of ship or flight) (Port of arrival) (Name of ship or flight) (16 > 종도장 개수 (Number of Pkgs) (Country of production) (18 > 선적항 (Part of shipping) (Date of shipping) (20 > 담당자 의와 같이 축산물(사료 등)의 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nimal product(feedstuff etc.). 년(Year) 월(Month) 일(Date) 검역신청인 (한글)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Applicant for Quarantine (영문) Name and Signature: Address: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To Directo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 구비서류 1. 수출국의 정부가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1가축전염병에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수입허가증명서 1부.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②신고일			심소
(B/L No.) (화물관리번호 (MRN-MSN-HSN) (Date of arrival) (가입화주 성명 주소 (Consignee) (Name) (Address) (**********************************	U신고민호					
(MRN-MSN-HSN) (Date of arrival) (구수입화주 성명 (Consignee) (Name) (Address)	③신고기관			I		
(Consignee) 성명 (Name) 주소 (Address) 정명 (Name) (Sp-출국 (Country of export) (Name) (Port of arrival) (Name of shipping) (Port of			<u> ⑥입항일</u>			
(Consignee) (Name) (Address) 영명 (용수출국 (Name) (Country of export) (Name) (Country of export) (Name) (Country of export) (Name) (Country of export) (Name) (Name) (Country of export) (Name) (Na				of arrival)		
응수출자 (Consignor)			·	,		
®수출자 (Consignor) (Name) (Country of export) (Consignor) 주소 (Address) (Type of products) (Total cost) (@************************************	(Consignee)			,		
(Consignor)	@스츠기			of avnort)		
(Address) (Type of products) (Type of products) (Total cost) (②총중량 (Gross weight) (B도착항 (Port of arrival) (16>총포장 개수 (Number of Pkgs) (Name of ship or flight) (17)생산국 (Number of Pkgs) (Country of production) (18>선적항 (Port of shipping) (Date of shipping) (Date of shipping) 20>담당자 위와 같이 축산물(사료 등)의 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nimal product(feedstuff etc.). 년(Year) 월(Month) 일(Date) 검역신청인 (한글) 성명: (서명 또는 인) 추소: Applicant for Quarantine (영문) Name and Signature: Address: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To Directo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구비서류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수입허가증명서 1부.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Country)	or export)		
(Type of products) (Total cost) ②총중량 (Gross weight) (®순중량 (Net weight) (®소중량 (Nert of arrival) (Name of ship or flight) <16>총포장 개수 (Number of Pkgs) (Country of production) <18>선적항 (Port of shipping) (Date of shipping) <20>담당자 위와 같이 축산물(사료 등)의 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nimal product(feedstuff etc.). 년(Year) 월(Month) 일(Date) 검역신청인 (한글)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Applicant for Quarantine (영문) Name and Signature: Address: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To Directo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 구비서류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가추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 제46조제1항의 규정어 마라 동물의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수입허가증명서 1부.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Gross weight) (B)소중량 (Net weight) (B)도착항 (Name of ship or flight) (16>총포장 개수 (Number of Pkgs) (Country of production) (218>선적항 (Port of shipping) (Date			:			
(Gross weight) (Net weight) (B도착항 (B선(기)명 (Name of ship or flight) <16>총포장 개수 (Number of Pkgs) (Country of production) <18>선적항 (Port of shipping) (Date of shipping) <20>담당자 위와 같이 축산물(사료 등)의 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nimal product(feedstuff etc.). 년(Year) 월(Month) 일(Date) 검역신청인 (한글)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Applicant for Quarantine (영문) Name and Signature: Address: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To Directo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 구비서류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마는 동물의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수입허가증명서 1부.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products)		cost)		
(용도착항 (Port of arrival) (Name of ship or flight) <16>총포장 개수 (Number of Pkgs) (Country of production) <18>선적항 (Port of shipping) (Date of shipping) <20>담당자 위와 같이 축산물(사료 등)의 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nimal product(feedstuff etc.). 년(Year) 월(Month) 일(Date) 검역신청인 (한글)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Applicant for Quarantine (영문) Name and Signature: Address: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To Directo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 구비서류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마라 동물의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수입허가증명서 1부.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الماسة				
(Port of arrival) (Name of ship or flight) <16>총포장 개수 (Number of Pkgs) (Country of production) <18>선적항 (Port of shipping) (Date of shipping) <20>담당자 위와 같이 축산물(사료 등)의 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nimal product(feedstuff etc.). 년(Year) 월(Month) 일(Date) 검역신청인 (한글)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Applicant for Quarantine (영문) Name and Signature: Address: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To Directo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 구비서류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수입허가증명서 1부.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eignt)		_		
<16>총포장 개수 (Number of Pkgs) <17>생산국 (Country of production) <18>선격항 (Port of shipping) <19>선격일 (Date of shipping) <20>담당자 위와 같이 축산물(사료 등)의 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nimal product(feedstuff etc.). 년(Year) 월(Month) 일(Date) 검역신청인 (한글) 성명: (사명 또는 인) 주소: Applicant for Quarantine (영문) Name and Signature: Address: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To Directo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 구비서류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농림수산식품부팅으로 정하는 수수료 2. 수입허가증명서 1부.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으로 정하는 수수료		rrival)		_		
(Number of Pkgs) (Country of production) <18>선적항 (Port of shipping) (Date of shipping) <20>담당자 위와 같이 축산물(사료 등)의 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nimal product(feedstuff etc.). 년(Year) 월(Month) 일(Date) 검역신청인 (한글)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Applicant for Quarantine (영문) Name and Signature: Address: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To Directo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 구비서류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수입허가증명서 1부.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으로 정하는 수수료						
(Port of shipping) (Date of shipping) <20>담당자 위와 같이 축산물(사료 등)의 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nimal product(feedstuff etc.). 년(Year) 월(Month) 일(Date) 검역신청인 (한글)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Applicant for Quarantine (영문) Name and Signature: Address: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To Directo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 구비서류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해당 동물의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수입허가증명서 1부.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②로 정하는 수수료				- '		
<20>담당자 위와 같이 축산물(사료 등)의 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nimal product(feedstuff etc.). 년(Year) 월(Month) 일(Date) 검역신청인 (한글)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Applicant for Quarantine (영문) Name and Signature: Address: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To Directo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 구비서류 수수료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수수료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46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농립수산식품부팅으로 정하는 수수료 2. 수입허가증명서 1부. 으로 정하는 수수료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18>선적항		<19>선격	벽일		
위와 같이 축산물(사료 등)의 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nimal product(feedstuff etc.).	(Port of s	hipping)	(Date of	shipping)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nimal product(feedstuff etc.).	<20>담당자					
Applicant for Quarantine (영문) Name and Signature: Address: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To Directo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 구비서류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수입허가증명서 1부.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I request t		e of the above animal product 년(Year) 윌(Month) (한글) 성명 :	일(Date)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To Directo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 구비서류 수수료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2. 수입허가증명서 1부. 으로 정하는 수수료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으로 정하는 수수료	Applicant f	or Quarantii	•	÷ :		
** 구비서류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 제46조제1항의 규정여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수입허가증명서 1부.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농림수산검9	격검사본부 장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 제46조제1항의 규정어 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 2. 수입허가증명서 1부.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To Directo	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 제46조제1항의 규정어 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라 농림수산식품부형 2. 수입허가증명서 1부.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없다고 (「가축 하는 동 2. 수입허기	증명한 검역 :전염병예방 :물의 경우어 가증명서 1부	증명서 1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호에 해당 제4 따라 이 한 이 한 리	가축전 염병 예 6조제1항의 나 농림수산4	규정에 불부령
ZHImixZV/mil스(뉴플시 54c/mil/시환프루)	(금국전	0 — -] 5 <i>4g/㎡(재혹</i>	· 6높기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처리기간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8 참조
- 작성요령
 - ① 신고번호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신고일 : 해당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신청하시는 일자 기재
 - ③ 신고기관 : 관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 기재
 - ④ B/L 번호 : 선하증권(B/L)번호를 기재(수입에 한하며, 없는 경우 공란)
 - ⑤ 화물관리번호 : 적하목록상의 화물관리번호 기재(수입에 한하며, 없는 경우 공란)
 - ® 입항일: 입항일자 기재
 - ⑦ 수입화주 : 해당검역물의 화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 ⑧ 수출자 : 상대국에서 해당검역물을 발송한 화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 ③ 수출국 : 해당검역물을 수출한 국가명 기재
 - ⑩ 거래품명 : 해당검역물의 품명 기재
 - ① 금액: 해당검역물의 수입금액(US\$) 기재
 - ① 총중량 : 해당검역물의 총중량(kg) 기재
 - ® 순중량: 해당검역물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중량(kg) 기재
 - ⑥ 도착항 : 해당검역물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항구명(공항포함) 기재
 - ⑤ 선(기)명 : 해당검역물이 선적된(선적될) 선박·항공기명을 영문으로 기재
 - <16> 총 포장개수 : 해당검역물의 총 포장 개수 기재
 - <17> 생산국 : 해당검역물이 생산된 국가명 기재
 - <18> 선적항 : 해당검역물이 선적된 항구명(공항포함) 기재
 - <19> 선적일 : 해당검역물이 선적된 일자 기재
 - <20> 담당자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표 16] <신설 2011.7.25>

<u>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u> (제3조의2제2항제5호 관련)

- 1.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 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합니다.
 -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소독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6.15>



대 한 민 국 농 림 수 산 식 품 부 동 물 검 역 증 명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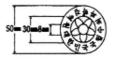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 (HEALTH CERTIFICATE OF ANIMAL QUARANTINE)

발행연월일 :	검역증번호
Date of issue :	Certificate No.
종류 및 품종	
(Species an Breed)	
두 수	
(Number of Head)	
성별 및 연령	
(Sex and Age)	
털 색	
(Color)	
보내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or)	
받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ee)	
선박 또는 항공기명	
(Name of ship and flight)	
생 산 지	
(Place of production)	
수출국 또는 수입국	
(Country of export or import)	
선적지 및 선적 연월일	
(Place & Date of shipping)	
도착항 및 도착 연월일	
(Port & Date of arrival)	
예방약의 종류 및 예방접종 연월일	
(Kind and Date of Vaccination or Test etc.)	
비고	

위의 동물은 대한민국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검역을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described animal was inspected or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in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REPUBLIC OF KOREA



(Remarks)

성명 (Signature) 검역관

(VETERINARY QUARANTINE OFFICIAL)

210mm×268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6.15>



대 한 민 국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

M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 [HEALTH CERTIFICATE OF ANIMAL PRODUCTS(FEEDSTUFF,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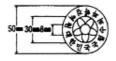
10 00 - 1 04 - 1	-1-17-4
발행연월일 :	검역증번호 :
Date of issue :	Certificate NO.

Certificate No.

위의 축산물(사료 등)은 대한민국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검역을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described animal products(feedstuff, etc.) was inspected or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in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REPUBLIC OF KOREA



성명 (Signature) 검역관

(VETERINARY QUARANTINE OFFICIAL)

210mm×268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1,6,15>

		거여기해자		처리	기간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					Ĺ	5일
대	표 성 명			주민등 록 번호		
주	소					
회	사 명					
검	역 대 상 물					
검역	^ᅾ 시행장소재지					
지경	성 신청 면적	대지:	m²	검역시설:	m²	
검	역 시 설		m² m²	m² m²	mi mi	m² m²
검역	「가축전염병여 역시행장으로 지정			L	L I 42조제5형	
		년	월	일		
			신청'	인(대표)	날인 또	는 서명
녿	5림수산검역검사본부	장 귀ㅎ	-}	_		
	신청	인 제출사항		담당공무	원 확인 시	-항
	가, 「축산물가공 영업허가증 업 또는 축신	사본(도축업	• 축산물가공	[] 건물능기부능본 [] 당합니다)	(수입축산	물만 해
구 비 서 류	다) 1부 나, 시설 평면도 다. 관리수의사 "[제3항에 따리인을 두어여본부 소속 관검역시행장은 다] 1부 라. 가공처리공건	· 검역관리인 라 관리수의 야 하는 검약 리수의사를 제외한다)!	사나 검역관 취시행장(방역 두어야 하는 만 해당합니	- -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의3서식] <개정 2011.6.15>

(앞 쪽)

저]	₹.
	ı	

검역시행장 지정서

대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정 사 항

검역대상물						
검역시행장						
회 사 명						
지정신청면적	대지:	m²	검호	취시설 :	m	2
검역 시설						
지정 기간						
지정 조건						

「가축전염병예방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m²)

(뒤 쪽)

년 월 일	구 분	당초지정사항	변경지정사항	(위 <i>쪽)</i> 확인(날인)
그 본 코	1 4			그 나오다/

[별지 제17호	[의4서식] <기	·경 2011,6,15	>					
	거 여 .	지행장지정병	비겨시청시		처리기간			
	78 FT /	୩ % ଓ ମାଟ ହ	1001020201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 # 사	주 소							
회 사	<u>अं</u>							
지 정 1	헌 호							
당초지	정 사 항							
변경하고/	가하는사항							
변 경 /	나 유							
「가축전	염병예방법	」제42조 및	및 같은 법	법 시행규칙 제4	2조제5항에			
따라 검역	시행장 지경	정사항을 위	와 같이 변	현경하고자 신청학	합니다.			
		년	월 9	길				
		신청인(1	대표)	날인	또는 서명			
농림수산검	역검사본부장	귀하						

※ 구비서류: 검역시행장 지정서 1부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의5서식] <개정 2011.6.15>

	Ą	·리수의사	•검역관리인 채	용신고서	
	대	표자		주민등록번호	
-11 S. 7L	炉	소			
채 용 자	<i>ম</i> ন	사 명			
	소	재 지			
관리수의사	성	护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				
검역관리인	수의사	-면허번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검역업무를 담당할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을 위와 같이 채용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

날인 또는 서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 구비서류: 경력증명서(검역관리인만 해당합니다) 1부

210mm×297mm(신문용지54g/m²)

[별지 제17호의6서식] <개정 2011.6.15>

		(공동)검역관리인	채.	용서	
대	성	명			주민등록번호	
莊	叶	소				
자	회 사	명				
1	소 재	지				
대	성	명			주민등록번호	
莊	ĸμ	소				
자	회 사	명				
2	소 재	지				
검역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관리	주	소				
인	수의사면	허번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 항에 따라 검역업무를 관리할 검역관리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 다.

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 구비서류: 경력증명서(검역관리인만 해당합니다) 1부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의7서식] <개정 2011.6.15>

	17 4 11 0 50	11,0,10			
스이	거여무 으	송통보서(신청/	서시		처리기간
T 18	(1) 기본 U	9 9 mm	17		3일
변 뚬		수량 및 중량		입항일]
상대국		적재일		검역증 확인	N 0
현장검사일		선(기)명		입항지	1
검역시행장					
(주소 및 명칭)					
검사내역 및					
조치사항					
운송차량 소속			차량번호		
출발일			도착일		
「가축전염병(_	조의3제I힝	에 따	라 위와 같이

수입검역물의 운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서명 또는 날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 구비서류: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운송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 역 관

서명 또는 날인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54g/m²)

[별지 제17호의8서식] <신설 2008.2.5>

조 류 관 리 일 지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검역관 : 서명 또는 날인

1. 입고사항

	~						
구	분	기	록	사	항	비	고
수 입 년	1월일						
수 입 총	수수						
입고시표	사수수						
입 고	수 수						

2. 관리일지

<u> 2, 단덕코의</u>					
구분 월일					
일 기					
실 내 온 도					
실 내 숩 도					
금일폐사수수					
폐 사 소 견					
폐사 후 처리사항					
식 욕 부 진 수 수					
하리혈변하는수수					
호 흡 장 애 수 수					
기 타 불 량 수 수					
급여사료의종류					
검역시행장내근무인원			.007	0 71-	

210mm×297mm(신문용지54g/m²)

[별지 제17호의9서식] <개정 2008.2.5> 수 출 초 생 추 관 리 일 지

		ı	l 산 생 산					부 화 (수입		_]		
종	계	수수		암				종	계	변	동	사	항
		T T		수									
ሎ	;=]L	생 /	산 년	월	일								
0	<u>ئ</u>	수집	및 호	1존	방법								
		입 :	란 년	월	일								
입	란	입	란		수								
		입권	·시소	독대	개역								
뉼	쨧	발	생시조	탁일	지	년 일	월 시		발기	생수링	‡		
		예)	방접증	중내	ग्र								
		(일자,	질병	명,	용량)								
기	타	- 수	출	내	떍								
		참	고	사	5)·								

작성일 :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_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의10서식] <신설 2008.2.5>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

<u>1.일반사항</u>

축 주	품 명	입난일자	입난수	발생수	수출국	선(기)명	수출일자	비	고

2. 관리 및 임상검사 사항

종 계	생 산 지					입 또· 화년월		
-	수 수	암				수		
종 란	생 산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ক ঘ	보존 방법							
입 란	입란시 조치사항							
	(소 독 등)							
발 생	발 생 시 작 일			년	월	일	시	
	예방접종내역							
기 타	(일자, 질병명 용량)							
	수 출 내 역	암				수		
발 생	후 건강 상태							

소 견:

검 역 관 : ①

판 정: 년 월 일 검역관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의11서식] <개정 2011.6.15>

수출 검역물 운송 통보서

품명	수량/두수	회사대	명	공ㆍ항만	. 4	수출예정일	비고
<운송내역>	>						
출발지 검	역시행장						
도 칙 검역시행·	·						
운송차량 소	속			차량번호			
「가축전」 수출검역물:		_		42조의3제2	?항 ^	게 따라 위외	- 같이
		년	월	일			
	신	청자(대표)		,	서명 또는 旨	할인
농림 수산검 역검	사본부장 귀중	ŀ					
위와 같이	원송을 통	보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검역	관	서기	명 또는 날인]
00000) 귀하						
				210mm	×297	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7호의12서식] <신설 2008,2,5>

종 란 관 리 일 지

작성자 : 날인 또는 서명

검역관 : 날인 또는 서명

I. 일반사항

구 분	기 록 사 항	비	고
원 산 지			
수 입 년 월 일			
입 란 년 월 일			
입 란 수			
발 생 예 정 일			
입란시 소독내역			

2. 관리사항

월일 구분				
파란등폐기란수				
조 치 사 항				
부화장내 온도				
부화장내 습도				
관 리 인 원				
기 타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의13서식] <신설 2008.2,5>

동 물 관 리 일 지

회사

작성자 :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검역관 :

서명

I. 일반사항

종류	입 고 년월일	입고두수	수출국명	선(기)명	년령	성별	모색
입검당시 상태							

2. 관리일지					
검사일자					
검사사항					
영양상태					
피 부 병					
호 흡 기					
채식상태					
배설물상태					
배뇨상태					
외 상					
폐사두수					
기 타					
사료종류					
종사인원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의14서식] <신설 2008.2.5>

수 입 화 물(검역)표

품 명					
수 량	C/T	중	량		kg
입항년월일		입고	선월 일		
선 명					
B/L NO.					
기호					
화물종별					
수입신고여부					
화 주 명					
수출국명					
검역사항			경유:	국	
비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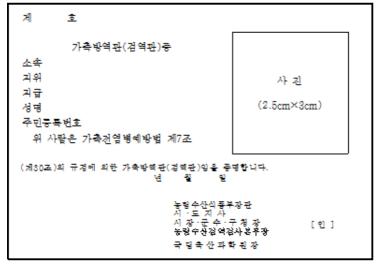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6.15>

[소독] 명령서 쥐·곤충제거]							
성							
대상자주소					•		
			종 부	Ē		수 량	
	지정검역물						
명령대상							
00910			차	<u>종</u>		수 량	
	운송차량						
기 간							
장 소							
방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 쥐·곤충제거)를 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	수산검역	검사본	부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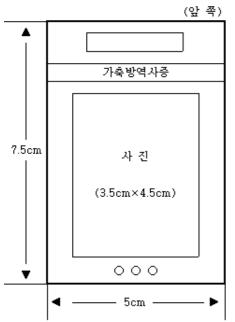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1.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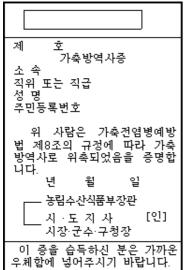
86mm×54mm(보존용지(1종) 120g/mi)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8.3.3>



50mm×75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별지 제21호서식]

제	호					
			검사시료	로(물건)=	수거증	
A 7171 1	시설명					
수거장소	주 소					
수거대상품 유자 또는						
수 거	품 명					
수 거 :	수 량					
수 거 /	사 유					
수 거 '	일 시					
피수거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또는 입회자	주 소					
비]	D.					
						항 및 동법시행규칙 거하였음을 증명합니
			년	월	일	
	수거지	사 직위 또는	직급:		성명 :	(서명 또는 인) -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08.2.5>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08.2.5>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08.2.5>